

#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 안내

□ 지원대상 사업(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규정: 자치구 지원 분담률)

## ○ 공동체 활성화 사업

-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, CCTV 설치·유지(70%)
-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(70%)
-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(70%)
-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(70%)
- 보육 및 보육시설의 개보수(70%)
-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(70%)
-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60%)
-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,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(60%)
-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(60%)
-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(60%)
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60%)

## ○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

-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(60%)
-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(60%)
- 경로당의 보수(60%)
-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(60%)
-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(50%)
-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·개선(50%)
-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·개선(50%)
-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·개선(50%)
-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(50%)
-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(50%)
-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(50%)
-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(50%)
-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(50%)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50%)

※ 『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』 [별표1]에 따른 지원기준 적용

## □ 지원 제외 대상

-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
-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16. 1. 1.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에 따른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
- 1억원 이상 공사, 5천만원 이상의 용역부분에 대한 『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』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